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 방지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권역별로 입지 가능한 공장 총량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 실질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제도 상으로는 공장의 건축허가 시에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미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장 총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과밀부담금은 부과 후 납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고지내용 변경에 따른 재부과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문제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장 설립승인 시 총량 부합여부 확인 및 통지 의무화(안 제23조제3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공장 총량규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나.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를 사용승인 단계로 단일화(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 시·도지사가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용도변경일에서 사용승인 신청 시로 변경하여 부과와 납부 시점을 일원화하고,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용도변경일에는 납부예상액 및 부과시기를 통지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다목 중 “「나노기술과학촉진법」 제16조”를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1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담금 부과내역을”로, “발급”을 “통지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납부 고지서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을 “변경된 부담금 부과내역을 통지”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

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장 총량규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부담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5.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u>나노기술과학촉진법</u> 」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다. 「 <u>나노기술개발 촉진법</u> 」 제16조-----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9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면	제19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 등) ① ----- ----- ----- -----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적은 납부 고지서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에 납부 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담금 부과내역을 ----- ----- 통지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납부 고지서를 발급---. 다만, <u>시·도지사는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장 총량규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u>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u>	② ----- ----- ----- ----- ----- 변경된 부담금 부과내역을 통지-----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④ (생략)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① · ②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③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661